

부산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2. 11. 9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 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0월 21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2년 10월 26일
- 다. 상정 일자 :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2년 11월 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세무1과장 추찬식)

가. 제안 이유

0.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0. 내무부 세제 22670-200(92. 6. 8) 및 부산직할시 세정 22670-1199 (92. 7. 18)호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구세 면제 조례(준칙)”에 의함

나. 주요 골자

0.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면제
0.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 신청
0.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이도 직권 면제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요지 (전문위원 이무상)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본 조례안에 적용된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의료
 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으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아야하며, 의료법 제31조는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로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이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한(수용자 포함) 또는 그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소속 의료기관을 개설
 하고자 할 때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과세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 경우 구세과세 면제가
 법상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며 민법 제32조는 종교단체의 경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조항으로 종교 재단을 설립하여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며,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회 사찰등에서는 비영리 법인 설립이 불가하고,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아닌
 경우 구세 과세 면제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이고, 본 조례는 비영리 의료기관의
 지원이 아닌 사회 복지 지원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사부등에서 국가예산으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 정책등은 세계적인 추세로 본 조례는 적법 적절한 것
 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이철형 위원	세무1과장 추찬식	'종교단체 비영리 법인이라 해서 무조건 구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데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관내에 본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성분도 치과는 재단법인 성베네딕도 수녀원에서 경영하고 있으며 사회 봉사 활동으로 광안4동 성분도 어버 이집을 운영 무의탁 노인을 수용 임종 때까지 보호해주고 있으며 소요되는 자금은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있음. 또한 진구 당감 3동 34-2에 성분도 빛 둘레의 집과 문현1동 97-5번지에 성분도 봉사의 집을 운영 영세민 및 전과자 자녀들에게 무료 도서실 및 무료 생활 상담을 운영하는 등 많은 봉사 활동을 함.'
이태희 위원	"	'본 조례 제3조 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요망'	'종교 단체 법인이 과세 면제를 신청하였을 때는 구청장이 확인하여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식적으로 종교 법인이 의료업을 한다는 것이 인지될 때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임.'

배종환 위원	세무1과장 추찬식	<p>'성분도 어버이집 무의탁 노인 수용비를 100% 법인이 부담한다는 내용과 현재 20명이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다고 했는데 잘못된 내용이 아닌지'</p> <p>'성분도 치과의 재산세, 종합 토지세는 언제부터 부과하고 있는지'</p> <p>'지난 5년간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p> <p>'성분도 치과의 구세 부과에 대하여 중앙부서에 질의를 한 적은 없는지.'</p>	<p>'아까 말씀드린 20명은 수용 가능 인원임.'</p> <p>'설립 이후로 계속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p> <p>'지난 5년간의 재산세 및 사업 소세, 90년부터 92년사이의 종토세를 92년 10월 17일자로 부과하였음.' 그 금액은 건축분 재산세가 405만원, 토지분 재산세가 88만원, 종토세가 194만원, 사업 소세가 98만원임.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성분도 치과 의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지방세법 제184조의 용도 구분에 의한 과세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례안 준칙이 시달된 후 의문이 생겨 '92.8. 25. 부산시장에게 질의 후 부과를 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회시받고 부과하게 된 것임'</p> <p>'성분도 치과측에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하지 않았음.'</p>
-----------	--------------	--	---

배종환 위원	세무1과장 추찬식	'성분도 치과는 설립연도가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추정한 5년전의 구세에 대하여도 추정해야 되지 않는 지.'	'성 베네딕도 수녀원의 설립 허 가는 65년 6월 30일이고, 재단 법인으로 등록된 것은 88년 10 월 7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임.'
박수용 위원	"	'성 베네딕도 수녀원 건물 총 면적이 2,881㎡인데 치과의원 을 빼고 남은 면적은 무엇에 쓰이고 있는지 또한 토지 면적이 5,109㎡ 인고 이중 치과의원 전체 사 용 면적이 1708.9㎡인데 나머 지 3,401㎡은 무엇으로 사용 하는지 또한 나머지 부분의 구세과세 여부는'	'치과 의원 사용부분 외의 건물 및 토지는 성당, 수녀기숙사 등으로 사용되고 이 부분은 지방세법 제184조 용도구분에 의해 재산세는 면제해주고 있음.'
오명희 위원	"	'본 조례안은 제출 이유가 성분도 치과를 하나만 두고 과세면제는 해줄 것이나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우리 남구 관내에 앞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갖춘 종교 법인이 의료기관을 설치해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출한 것 인지의 견해는.'	'앞으로 보다 나은 종교 단체 병원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기본 취지임.'

5. 토론 요지

가. 찬성(배종환 위원)

본 조례안을 가결시키고 부결시키는 것을 떠나서 현재로서는 우리 구민에게 특별한 영향이 없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함.

나. 반대(이재득 위원)

이 조례안과 직접 관련되는 성분도 치과를 찾는 손님 7명을 상대로 여론을 청취한 결과 구세 문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치과에서 많은 수익을 남기는데 그 수익금은 상부에 올라가는 것인지 남구 구민에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데 구세 문제를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반대함.

※ 배종환 위원 찬성 토론 후 위 반대 토론 철회 발언 있었음

철회 이유 : 전국적으로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 수입으로 비단 남구 뿐만 아니라 전국 산하에 많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병원을 설치하여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대 토론 철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